

파주시 시민의 날 조례

[시행 2024.09.30]
(일부개정) 2024.09.30 조례 제2134호

관리책임부서명 : 행정지원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10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2. 23., 2024. 9. 30.>

제2조(시민의 날) ① 매년 10월 2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. <개정 2024. 9. 30.>

② 파주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(週間)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9. 30.>

제3조(운영)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시민의 날 기념행사
 2. 파주시 역사 유적지 계승을 위한 행사
 3. 체육행사
 4. 기타 문화·예술 행사
- [본조신설 2024. 9. 30.]

제4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 12. 23.>
[제3조에서 이동 <2024. 9. 30.>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12. 23. 조례 제1003호) (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 9. 30. 조례 제213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